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5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의 검토	5
(1)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타당성	5
(2) 지방소비세액 안분기준의 적정성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4. 10. 4.
3. 회부연월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35.3%로 10%p를 단계적(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매년 1%p씩)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u>253</u>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u>353</u> 을----- -----.
제71조(납입) ¹⁾ ①·② (생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 ----- ----- -----.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50</u> 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 게안분하여 납입한다.	1. ----- - <u>353분의 70</u> 에----- ----- ----- ----- -----.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60</u> 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2. ----- <u>353분의 90</u> 에-----

현 행	개 정 안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²⁾ 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 ----- ----- ----- ----- -----.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100</u>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략)	3. ----- <u>353분의 130</u> 에-----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43</u>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략)	4. ----- ----- <u>353분의 63</u> 에-----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은 매년 1천분의 10씩 각각 가감하여, 2034년까지 해당 비율을 1천분의 647 대 1천분의 353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에 제71조제3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비율은 인상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매년 조정한다.	

1)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 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2) 「법률 제12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개정안의 검토

(1)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타당성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납세의무자·납세지를 준용 또는 공유³⁾하고 부가가치세액⁴⁾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세임.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① 2010년 도입 당시 5.0%였으나, ② 2014년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11.0%로 6.0%p 인상하였고, ③ 2019~2023년간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5.3%로 총 14.3%p 인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지방소비세 연혁]

시행일	세율	개정목적						
2010.1.1. (신설)	부가가치세액의 5.0%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및 지방재정 지원						
2014.1.1.	부가가치세액의 11.0%	2014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 당초 일괄 4% →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이후 추가 개정)						
2019.1.1.	부가가치세액의 15.0%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 소요재원 보전 *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2020.1.1.	부가가치세액의 21.0%	<table><tr><th>지자체 지출 관련</th><th>지자체 수입 관련</th></tr><tr><td>- 균특회계 사업(3.5조원 규모) 지방이양</td><td>-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1.22%p 인상 병행</td></tr><tr><td>-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td><td>-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td></tr></table>	지자체 지출 관련	지자체 수입 관련	- 균특회계 사업(3.5조원 규모) 지방이양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1.22%p 인상 병행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지자체 지출 관련	지자체 수입 관련							
- 균특회계 사업(3.5조원 규모) 지방이양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1.22%p 인상 병행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3) 「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4)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

시행일	세율	개정목적	
2022.1.1.	부가가치세액의 23.7%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 소요재원 보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지자체 지출 관련	지자체 수입 관련
		-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2.3조원 규모) 지방이양	-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2023.1.1.	부가가치세액의 25.3%		-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 국고보조율 인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지속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국재정자주도(지자체 자주재원/지출예산)”는 다음 표와 같이 최근 10년간 큰 변동이 없으며, 특히 2024년은 전년 대비 3.4%p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참고로, 국가재정 여건 또한 “총수입/총지출 비율” 기준으로 최근 악화되는 추세이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도에서 90% 이상을 기록하여 지방재정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가·지방 재정여건 비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재정자주도(A)	68.7%	69.0%	69.1%	69.3%	68.4%	69.4%	66.4%	69.6%	69.7%	66.3%
총수입/총지출비율(B)	101.8%	101.2%	103.4%	104.3%	101.4%	94.0%	86.5%	91.1%	97.9%	93.2%
격차(B-A)	33.1%p	32.2%p	34.3%p	35.0%p	33.0%p	24.6%p	20.1%p	21.5%p	28.2%p	26.9%p

주 1) 전국재정자주도: 지자체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지출예산규모

2) 총수입·총지출: 정부의 총계 기준 재정수입·지출에서 내부거래·보전거래와 9개 기금(외국환평형기금 및 8개 금융성기금)을 차감한 실질적인 정부 재정수입·지출

3) 두 지표 모두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이러한 “전국재정자주도(지자체 자주재원/지출규모)” 및 “총수입/총지출 비율”의 분모인 “지출”에는 의무지출·재량지출이 모두 포함되며 이 중 재량지출의 규모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재정 기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어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구체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되면 그 중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 19.24% 및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20.79%가 상쇄되어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포함)의 실제 수입 증가분은 “부가가치세액의 5.997%p” 수준이 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는 「의안번호 22045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이 동반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상 개정안에 따른 2025~2034년간 국세·지방세 세수 변화를 살펴보면, 국세(부가가치세)는 10년간 연평균 8.5조원이 감소하고 지방세(지방소비세)는 동일 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에 따른 국세·지방세 세수 변화 추정]

(단위: 조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연평균
국세 (부가가치세)	-1.2	-2.5	-3.9	-5.4	-7.0	-8.8	-10.7	-12.8	-15.0	-17.4	-8.5
지방세 (지방소비세)	1.2	2.5	3.9	5.4	7.0	8.8	10.7	12.8	15.0	17.4	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의안번호 2204550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지방소비세액 안분기준의 적정성

현행법 제71조제3항은 다음 표와 같이 지방소비세가 신설·인상된 연혁별(같은 항 각 호)로 그에 해당하는 세액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안분대상		안분지자체	안분기준	비고
부가가치세액 5.0%p (법 제71조제3항제1호)		시·도	가중치 반영 시·도 소비지수 비율로 안분	2010년 신설분 (지방재정 확충)
부가가치세액 6.0%p (법 제71조제3항제2호)	$(6.0\% - B - C) \times (10/11) = 3.2994\%p(A)$	시·도	주택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최근 3년 취득세 감소분 비율 등으로 안분	2014년 인상분 (주택취득세율 인하 보전)
	$A/11 = 0.3299\%p$	시·도	주택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최근 3년 지방교육세 감소분 비율 등으로 안분	
	$6.0\% \times 19.24\% = 1.1544\%p(B)$	시·도 및 시·군·구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로 안분	
	$6.0\% \times 20.27\% = 1.2162\%p(C)$	시·도교육청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로 안분 ※다른법률에 따른 교육전출금분 일부는 시·도에 안분	
부가가치세액 10.0%p (법 제71조제3항제3호)		시·도	가중치 반영 시·도 소비지수 비율로 안분 ※2026년까지는 전환사업 보전 등을 위한 별도 기준 적용	2019~2020년 인상분 (1단계 재정분권 재원)
부가가치세액 4.3%p (법 제71조제3항제4호)	$4.3\% \times 60\% = 2.58\%p$	시·도	가중치 반영 시·도 소비지수 비율로 안분 ※2026년까지는 전환사업 보전 등을 위한 별도 기준 적용	2022~2023년 인상분 (2단계 재정분권 재원)
	$4.3\% \times 40\% = 1.72\%p$	시·군·구	인구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안분 ※2026년까지는 전환사업 보전 등을 위한 별도 기준 적용	

주) 가중치: 수도권 100%, 수도권외 광역시 200%, 특별자치시, 수도권외 도, 특별자치도 3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개정안은 그에 따른 세율 인상분(10%p)의 안분기준이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현행법 제72조제3항 각 호의 안분대상 금액에 2~3%p씩 분산 반영하여 해당 안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대상 금액 변동]

안분대상 금액		비고
현행	개정안	
부가가치세액 5.0%p (법 제71조제3항제1호)	부가가치세액 7.0%p (법 제71조제3항제1호)	2010년 신설분 (지방재정 확충)
부가가치세액 6.0%p (법 제71조 제3항제2호)	부가가치세액 9.0%p (법 제71조제3항제2호)	2014년 인상분 (주택취득세율 인하 보전)
부가가치세액 10.0%p (법 제71조제3항제3호)	부가가치세액 13.0%p (법 제71조제3항제3호)	2019~2020년 인상분 (1단계 재정분권 재원)
부가가치세액 4.3%p (법 제71조제3항제4호)	부가가치세액 6.3%p (법 제71조제3항제4호)	2022~2023년 인상분 (2단계 재정분권 재원)

주) 가중치: 수도권 100%, 수도권외 광역시 200%, 특별자치시, 수도권외 도, 특별자치도 3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현행법 제72조제3항제2호~제4호에 따라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2014년 주택취득세율 인하 보전 및 2019~2023년 재정분권 소요재원 보전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세율 인상분은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시와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에 따른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세율인상분은 그 입법목적이 유사한 현행법 제72조제제3항제1호에 일괄 반영(부가가치세액의 5.0%p→15.0%p)하거나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하여 새로운 안분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